2021. 12. 10.(금) 10:00
제29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13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계상하고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973,000	958,000	15,000
일 반 회 계	964,605	949,606	14,999
특 별 회 계	8,395	8,394	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894	2,894	0
의료급여기금	818	817	1
기반시설	118	118	0
치수사업	4,565	4,565	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73,000	958,000	15,000	1.57
일반회계	계	964,605	949,606	14,999	1.58
	지방세수입	198,672	196,872	1,800	0.91
	세외수입	43,745	40,613	3,132	7.71
	경상적세외수입	24,866	24,769	97	0.39
	임시적세외수입	11,789	11,398	391	3.43
	지방행정제제·부담금	7,090	4,446	2,644	59.45
	지방교부세	165,060	161,899	3,161	1.95
	조정교부금등	35,723	33,262	2,461	7.40
	보조금	421,280	419,464	1,816	0.43
	국고보조금등	298,322	298,378	△56	△0.02
	시·도비보조금등	122,958	121,086	1,872	1.55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125	97,496	2,629	3.41
특 별 회 계		8,395	8,394	1	0.01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73,000	958,000	15,000	1.57
일반회계	계	964,605	949,606	14,999	1.58
	일반공공행정	107,295	110,082	△2,787	△2.53
	공공질서및안전	2,994	3,240	△246	△7.61
	교육	9,657	9,865	△208	△2.11
	문화및관광	54,388	59,320	△4,932	△8.31
	환경	26,039	27,380	∧1,341	∧4.90
	사회복지	342,885	343,077	△192	△0.06
	보건	20,842	21,417	△575	△2.69
	농림해양수산	57,027	60,287	△3,260	△5.41
	산업·중소기업	3,988	4,115	△127	△0.89
	교통및물류	125,185	126,257	∧1,072	∧0.85
	국토및지역개발	63,347	65,657	△2,310	△3.52
	예비비	2,185	7,515	△5,330	△70.93
	기타	148,773	111,394	37,379	33.56
특 별 회 계		8,395	8,394	1	0.01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73,000	958,000	15,000	1.57
일반회계	계		964,605	949,606	14,999	1.58
	인건비		92,600	97,663	△5,063	△5.18
	물건비		39,244	42,025	△2,781	△6.62
	경상이전		499,533	505,925	△6,392	△1.26
	자본지출		270,706	277,888	△7,182	△2.58
		시설비및부대비	249,679	256,132	∧6,453	∧2.52
		민간자본이전	10,276	10,825	△549	△5.0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701	4,743	△42	△0.88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60	696	△36	△5.18
		자산취득비	5,390	5,492	△102	△1.86
	융자및출자		0	10	△10	순감
	내부거래		41,852	1,809	40,043	2213.48
	예비비및기타		20,670	24,286	△3,616	△14.89
		예비비	2,185	7,515	∧5,330	∧70.93
		반환금기타	18,485	16,771	1,714	10.22
특 별 회 계			8,395	8,394	1	0.01

4)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 400억 원**

○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 부족분 등 반영 : 22.9억 원**

-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방역소독 및 확진자 이송료 : 0.8억 원
- 도동서원 주차장 조성사업 : 1.4억 원
- 다사 서재리 선진섬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 1.4억 원
- 다사 서재휴먼시아~진흥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 1.3억 원 등

○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조정액 : 16.8억 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 2.4억 원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24.3억 원
- 현풍교통문화파크 조성(현풍시외버스 간이터미널 설치) : 6억 원
-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록 개설 : 6.8억 원
- 금포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 1.3억 원
- 공공근로사업 운영 : △12억 원
- 기본형 공익직불금 : △18.9억 원 등

○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 17.2억 원**

-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14.2억 원
-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3억 원

○ **연도내 집행불가사업 등 세출구조 조정 : △307억 원**

- 시설관리공단 미집행 전출금 : △32억 원
- 기타 집행불가사업 및 집행잔액 등 조정액 : △275억 원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천 80억 원보다 150억원(증 1.57%)이 증가된 9천 730억원 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천 496억원 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9천 646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31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31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 24억 6천만원, 국 · 시비보조금 18억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 3천만원 등

총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총 30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16.8억원,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 부족분 22.9억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 ·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집행 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나 법정경비의 부족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총 예산 2,118억 6천만원 중

1,003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월액 938억8천만원 대비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사전 사업부지 매입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연도내에 집행가능한 순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통합계정의 공공예금 이자 및 예수금 수입을 현행화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변경 계획

- 수 입 : 증40,154,08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124,166,912**	**84,012,827**	**40,154,085**
	· 공공예금 이자수입	778,790	624,705	154,085
	·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23,388,122	83,388,122	40,000,000

- 지 출 : 증40,154,08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103,866,912**	**63,712,827**	**40,154,085**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03,866,912	63,712,827	40,154,085

○ 통합계정 변경 계획

- 수 입 : 감 50,33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6,911,906**	**6,962,943**	**△51,037**
	· 공공예금 이자수입	286	50,625	△50,339
	· 예수금수입	6,911,620	6,912,318	△698

- 지 출 : 감 50,33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6,911,906**	**6,962,943**	**△51,037**
	· 통합계정 예치금	6,831,906	6,962,943	△131,037
	·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80,000	0	80,00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검토의견

○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 경비, 집행잔액 등을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은 기정 637억1천만원에서 400억원을 전입하여 1,038억 6천만원으로, 통합계정은 기정 69억6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을 감하여 6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2021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부
2) 관계법령 1부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논공읍 공단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 논공읍 공단출장소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시설물의 기능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 복합청사를 조성하여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물 내 설치되는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달성군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

-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의 심각한 외부균열과 누수의 발생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 동 위치에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을 재건립(취득)하여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이 많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함
-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樂·敬·淸)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1층 필로티 공간을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 공간으로 구성하고
- 이에 따른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 추가 매입(779.1㎡ → 1496.1㎡)으로 체험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
- 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위한 농촌체험교육장 조성 및 꽃묘 생산 확대를 위한 육묘장을 조성하고자 함

4.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골자

○ **논공읍 공단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 위 치: 논공읍 북리 1-130번지
- 기 간: 2021. 4. ~ 2024. 2.
- 규 모: 부지면적 897㎡, 건축 연면적 1,425.4㎡(지하 1층/지상3층)
- 주요시설: 논공읍출장소, 예비군 읍대사무실, 청년창업 지원센터
- 총사업비: 5,200백만 원(군비)
 · 공사비 4,390, 설계비 210, 감리비 250, 시설부대비 10, 철거비 90, 예비비 250

○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정비사업

- 위 치: 유가읍 양리 287-1번지 외 2필지(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 기 간: 2021. 9. ~ 2023. 5.
- 규 모: 연면적 282.33㎡, 건물 1동(지상2층)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내부 시설	비 고
2층	205	전시관,영상실	조정석 연출
1층	77	관리실,기계실,화장실	

- 총사업비: 1,193백만 원(군비)
 - 설계·감리비 88, 건축비 1,033, 철거비 62, 이전 및 물품 보관비 10

○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 위 치: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외 2필지
- 기 간: 2022. 1. ~ 2022. 12.
- 규 모: 1,107㎡(주차면수 32면정도)
- 총사업비: 1,550백만원정도(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군비)

○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위 치 : 옥포읍 기세리 599 외 4필지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849.54㎡ (대지면적 1,496.1㎡)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송해기념전시관, 체험실, 하늘정원, 카페 등
- 사업기간 : 2019. 8. ~ 2022. 6.
- 사 업 비 : 2,870백만 원(국 680, 시 336, **군 1,854**)

※ 사업비 증액: 770백만 원

-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비: 600백만 원 정도
-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 공간 공사비: 170백만 원 정도

- 변경개요

(단위 : ㎡)

구분 / 사업개요		당 초	변 경(안)	증 가	비 고
위치 및 면적	기세리 598	251	좌동	-	
	기세리 599	440	좌동	-	
	기세리 523-3	-	717	증)717	주차장 추가 매입 토지
	기타 (대부,편입)	88.1	좌동	-	
	계	779.16	1496.1	증)717	
연 면 적		711.16	849.54	증)138.38	1층 필로티 (주민판매 공간조성)
사업기간		2019. 8 ~ 2022. 5	2019. 8~ 2022. 6		
총사업비(백만원)		2,100	2,870	증)770 (군비)	

※ 총면적 3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요구

○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 위 치: 유가읍 달창로28길 31(유가초 한정분교 폐교)
- 기 간: 2022. 01. ~ 12.
- 규 모: 부지면적 15,531㎡ ※ 기존 건물 8동(연면적1,484.2㎡)
- 주요시설: 온실(교육장 및 육묘장), 자연학습체험장 등
- 총사업비: 6,200백만 원(군비)
 - 부지매입 6,000백만 원, 공사비 200백만 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필지)	수량	금액	건수(필지)	수량	금액	건수(필지)	수량	금액
취득	계					6 (9)	20,546	6,889,425	6 (9)	20,546	6,889,425
	1.매입	토지				3 (6)	17,355	301,259	3 (6)	17,355	301,259
		건물				1	1,484	195,166	1	1,484	195,166
	2.교환	토지									
		건물									
	3.기타	토지									
		건물				2	1,707	6,393,000	2	1,707	6,393,00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토지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목		재산의 표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재지			일단의 수량 (㎡)					주소	성명	
1 (건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논공읍	북리	1-130	1,425	1,425	5,200,000,000	2024. 2.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수	
2 (건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유가읍	양리	287-1 288-2 산44-7	282.33	282.33	1,193,000,000	2023. 5.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공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재건축
3	답	답	옥포읍	본리리	2384-4	427	427	107,475,900	2022.8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17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옥계길 34-6	최언지 최우찬	
4	답	답	옥포읍	본리리	2382-1	635	635	97,663,000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851	곽홍재	
5	구거	구거	옥포읍	본리리	2538	45	45	2,857,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지목		재산의 표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재지			일단의 수량 (㎡)					주소	성명	
6	유지	유지	옥포읍	기세리	523-3	717	717	총: 93,263,500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69,393,500원 (170,500원×407㎡) 개발제한구역 23,870,000원 (77,000원×310㎡)	2022.3.	선비문화 체험관 주차장 부지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7 (토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유가읍	한정리	224-1 221-1	15,179 352	15,179 352	3,054,947,700 (196,700원×15,531㎡)	2022.3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대구광역시(교육감)	
8 (건물)	학교용지	학교용지	유가읍	한정리	224-1	1,484.2	1,484.2	195,166,000 (시가표준액)					

위 치 도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30번지





현장사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30번지



위 치 도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공사】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양리 288-2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양리 288-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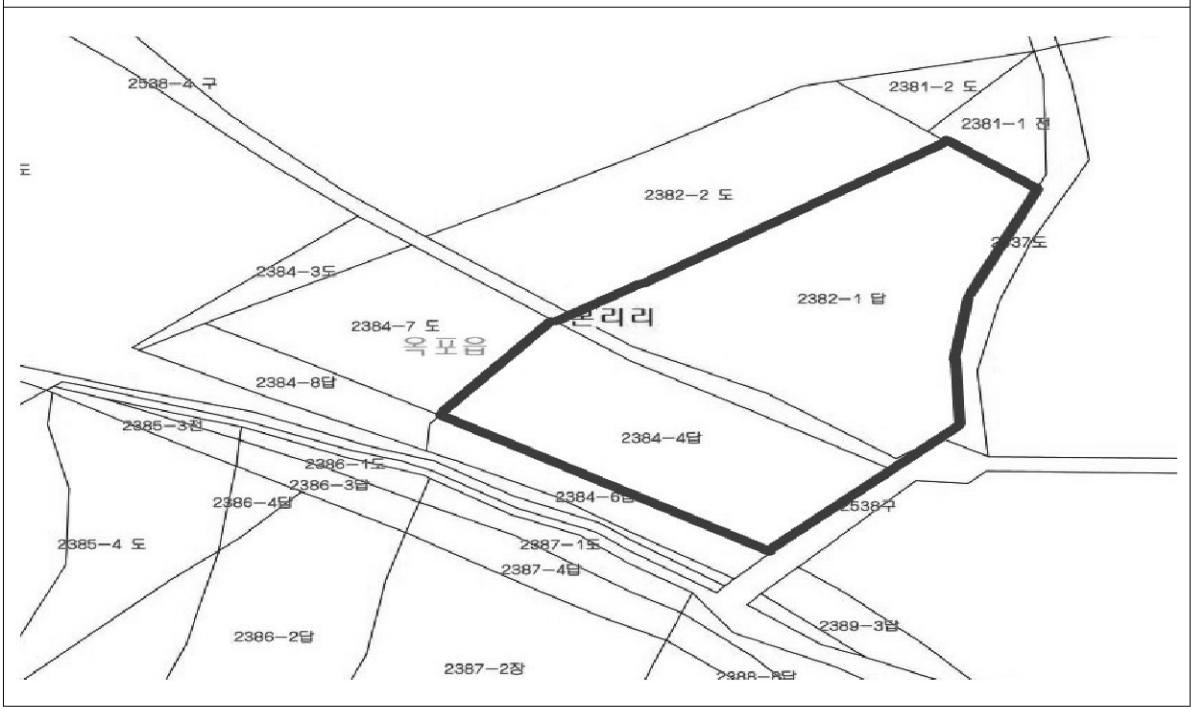


위 치 도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외 2필지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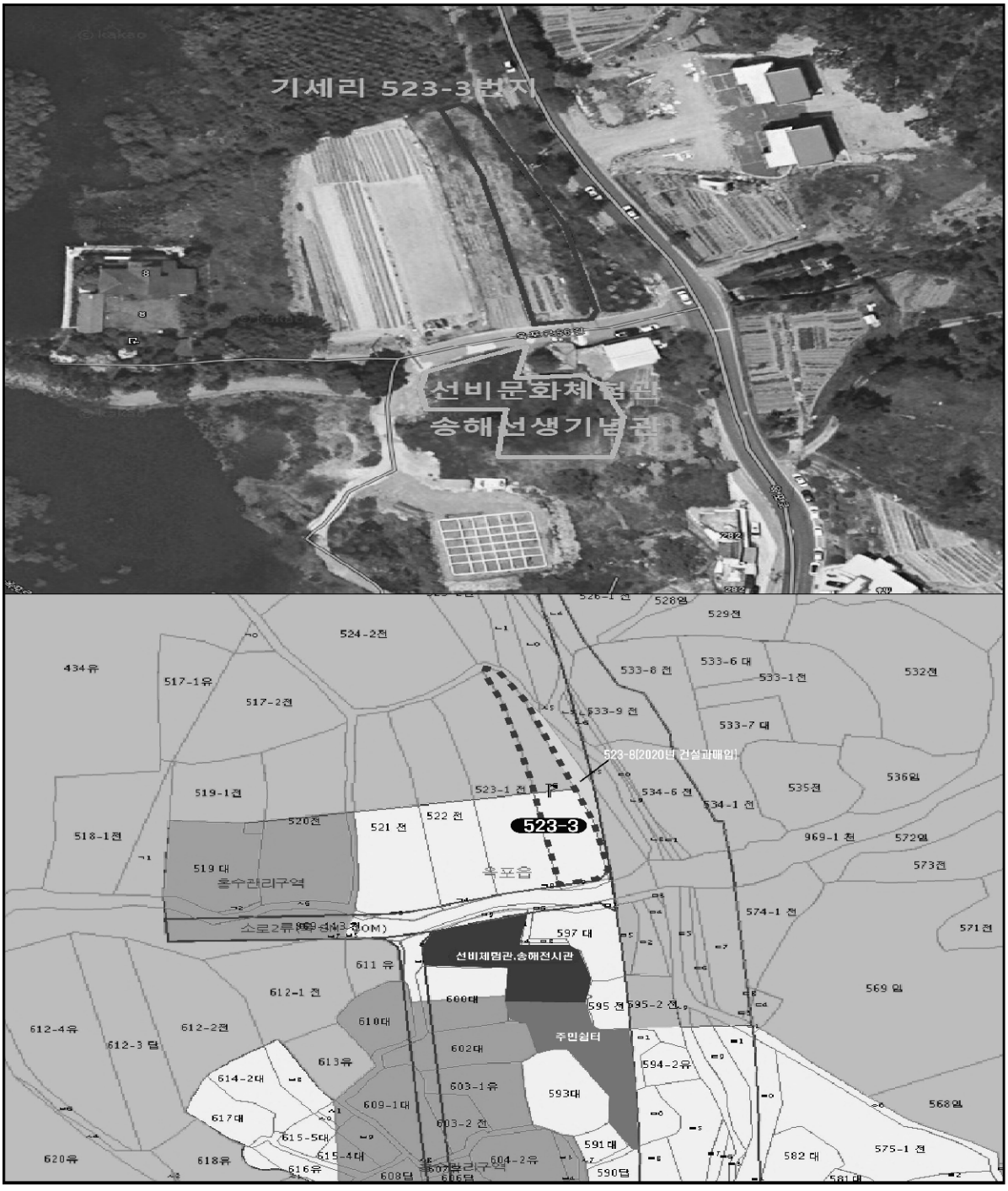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2384-4번지 외 2필지



위 치 도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위 치 도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224-1, 221-1번지





현장사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224-1번지 일원



Ⅱ. 검토의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논공읍 공단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 기존 논공읍 공단출장소의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보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청년실업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달성1차산업단지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공공복합청사 조성으로 생활인프라 개선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

- 2005년 건립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노후화로 외부 벽면 균열 및 누수가 심각하여 기념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옥포 본리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마을 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공동주차장 조성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 신설 건의에 따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 긴급차량 확보 및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선비문화체험관,송해기념전시관이 12월 4일 개관하였으나, 주차장이 없어 인근 송해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농촌체험교육장 및 육묘장 조성**

- 농업과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도시민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농촌체험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폐교부지를 매입후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체험 및 농기계 실습교육장 활용 및 환경정비를 위한 꽃 육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기술센터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2. 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작목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성과의 전파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3. 새기술 실증시험 지역 적응사업
4. 농촌자원의 발굴 및 육성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지원 사업
6.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활동(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지원 사업
8.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소비자 교육 및 지원 사업
9. 종자·종묘·종균·미생물 등 보급사업
10.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참달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활용 의무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차입하여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5.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계획

- 발 행 액 : 11.5억원 (일반회계)

※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지원액(11,500백만원)의 10%

- 발행사업 : 도시재생뉴딜사업(1000년의 화원, 다시꽃피다)
- 발행용도 : 거점시설 지역공동체공간 '소통·봄꿈' 조성
- 차 입 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상환조건 : 13년 만기 일시상환
- 이 율 : 연 1.8%
- 발행시기 : 2022년도

○ 지방채 상환계획

-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에 맞추어 중도 조기상환 추진

Ⅱ. 검토의견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대구교도소 후적지 주변 노후 원도심을 대상으로 약화된 공동체 기반, 열악한 공공복지 서비스 환경, 쇠퇴한 상권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금액을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화원 천내리를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15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달성군의 재정상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크게 없으나 공모조건이므로 지방채를 발행후 조기 상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5. 28., 2015. 5. 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4. 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4. 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8.>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③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2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4,925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금으로 배정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table>
<tr><td>기 관 명</td><td>한국지방세연구원</td></tr>
<tr><td>출연대상</td><td>○ 대　　표 : 배진환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서초구, (인력) 정원 92명/현원 67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td></tr>
<tr><td>출 연
사 업 비</td><td>○ <u>출연 예정금액 : 24,925천원(군비 24,925천원)</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1년
예산액</th><th rowspan="2">2022년
요구액</th><th colspan="5">재원별</th></tr>
<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24,697</td><td>24,925</td><td></td><td></td><td></td><td>24,925</td><td></td></tr>
<tr><td colspan="2">기관 운영비</td><td>1년</td><td>17,041</td><td>16,849</td><td></td><td></td><td></td><td>16,849</td><td></td></tr>
<tr><td colspan="2">주요 사업비</td><td>1년</td><td>7,656</td><td>8,076</td><td></td><td></td><td></td><td>8,076</td><td></td></tr>
<tr><td></td><td>연구사업</td><td>1년</td><td>2,223</td><td>2,742</td><td></td><td></td><td></td><td>2,742</td><td></td></tr>
<tr><td></td><td>자치단체지원</td><td>1년</td><td>5,433</td><td>5,334</td><td></td><td></td><td></td><td>5,334</td><td></td></tr>
</table></td></tr>
<tr><td>출 연
필 요 성</td><td>○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td></tr>
<tr><td>근거·법령</td><td>○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td></tr>
<tr><td>사업부서
의 견</td><td>○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td></tr>
</table>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 학술행사,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였고, 특히 교육·학술행사 등 대외 활동은 온라인 중계행사 등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수행하였음.

○ 외부감사인(안세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 연구과제 117건 수행, 지방세 교육(2,784명)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 운영실적 평가 >

○ 연구의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유형별 보고회 시행 등 평가방식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화하고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추경편성을 통해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였으며 조직 슬림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분기별 환류 또한 필요함.

○ 세부 사업별로 당초 계획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 수준 초과달성한 사례가 많으나, 각 사업 단위별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운영 체계를 유연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3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결산 지방세	2020년 결산 보통세 (C)	2022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207,709,618	207,705,617	24,925	24,925	0	228

출연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
<tr><td rowspan="2">설립근거</td><td colspan="3" rowspan="2">「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td><td>전화번호 : 02-2071-2789</td></tr>
<tr><td>홈페이지 :
www.kilf.re.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td><td>기관형태</td><td>출연</td></tr>
<tr><td rowspan="2">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td><td>계</td><td colspan="2">정규직</td><td>임시직 · 파견</td></tr>
<tr><td>80명</td><td colspan="2">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td><td>13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td></tr>
<tr><td rowspan="16">임 원
(2021년 8월
기준)</td><td>직 책
(직책명)</td><td>성 명</td><td>주요경력</td><td>임 기</td></tr>
<tr><td>이사장</td><td>백 재 현</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td><td>2020.12.22. ~ 2023.12.21.</td></tr>
<tr><td>부이사장</td><td>이 동 진</td><td>서울 도봉구청장</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배 진 환</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이 우 종</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김 일 융</td><td>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임 재 진</td><td>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신 용 식</td><td>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박 일 동</td><td>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김 미 경</td><td>서울 은평구청장</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이 항 진</td><td>경기 여주시장</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백 선 기</td><td>경상북도 칠곡군수</td><td>2021.2.28. ~ 2022.2.27.</td></tr>
<tr><td>이 사</td><td>유 태 현</td><td>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td><td>2021.2.28. ~ 2022.2.27.</td></tr>
<tr><td>감 사</td><td>하 종 목</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td><td>당 연 직</td></tr>
<tr><td>감 사</td><td>유 희 숙</td><td>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td><td>2020.2.28. ~ 2022.2.27.</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4">-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td></tr>
<tr><td colspan="2">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1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 · 출연액
(단위:백만원)</td><td>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td></tr>
<tr><td rowspan="3">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td><td>연도</td><td>2019</td><td>2020</td><td>2021</td><td rowspan="3">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td><td>자산</td><td>19,680
(자산 총액)</td></tr>
<tr><td>예산액</td><td>12,897</td><td>10,855</td><td>11,928</td><td>부채</td><td>127
(부채 총액)</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10,843</td><td>8,972</td><td>10,821</td><td>자본</td><td>19,553
(자본금 총액)</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td><td colspan="3">총수익</td><td>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3">12,504</td><td>9,816</td><td>2,688</td></tr>
</table>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Ⅱ. 검토의견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연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2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 640백만 원**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table>
<tr><td>출 연
대 상</td><td>○ 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대 표 : 박성태(비영리 공익법인, 2008. 10. 15. 설립)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12길 66
(화원상설시장 건물 2층)
- 기본재산 : 20억원(달성군 출연금)
- 주요사업
· 시설운영 : 노인복지관, 장난감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6개 수탁시설
· 모금사업 :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
· 배분사업 : 지정 · 결연 후원, 저소득 가정 지원, 후원물품 등
· 기획사업 : 홀로어르신 명절나기,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지원 등</td></tr>
<tr><td>출 연
사업비</td><td>○ 출연 예정 금액: 6억 4,000만원
- 운영비: 6억 4,000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사업기간</th><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th rowspan="2">2022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r><td>인건비</td><td>2022. 1. 1.
~12. 31.</td><td>397</td><td>445</td><td>445</td><td>-</td><td>-</td><td>445</td><td>-</td></tr>
<tr><td>기본경비</td><td>2022. 1. 1.
~12. 31.</td><td>201</td><td>141</td><td>141</td><td>-</td><td>-</td><td>141</td><td>-</td></tr>
<tr><td>사업비</td><td>2022. 1. 1.
~12. 31.</td><td>78</td><td>54</td><td>54</td><td>-</td><td>-</td><td>54</td><td>-</td></tr>
</table></td></tr>
<tr><td>출 연
필요성</td><td>○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출연금 교부</td></tr>
<tr><td>근거
법령</td><td>○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출연금 교부)</td></tr>
</table>

사업부서의 견 (총평)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음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부서(복지정책과)는 달성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의견

○ 2022년 출연금 6억 4,000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코로나19로 인한 잉여금 증액에 따른 출연금 감액 신청
- 인건비 및 사회보험 기본 인상률에 맞춰 인건비 기본경비 증액
- 사업비는 잉여금으로 진행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최종) (A)	2022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C-A)
총 계	814	676	640	640	0	▲36
인건비	379	397	445	445	0	48
기본경비	144	201	140	140	0	▲61
홍보사업	3	3	1	1	0	▲2
교육훈련비	80	22	1	1	0	▲21
수탁시설전출금	53	53	53	53	0	0
시설지원사업	60	0	0	0	0	0
다둥이가족 페스티벌	95	0	0	0	0	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전화번호	053-617-9200
		홈페이지	www.dswelfare.kr

설립근거

법률 :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8. 10. 15.

임 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대표이사 (비상임)	박성태	前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021. 1. 18.~2023. 1. 17.
상임이사	최상진	前 달성군 자치행정국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김상근	(사)수경복지재단 이사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차준용	前 달성문화원 원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이은진	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진덕수	(사)덕수복지재단 이사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이미애	사회복지법인 서재어린이집 원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신후남	前 달성군 주민복지국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이사	오대진	前 달성군자원봉사센터장	2021. 1. 18.~2023. 1. 17.
비상임감사	김대근	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	2021. 1. 18.~2023. 1. 17.
비상임감사	장명진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21. 1. 18.~2023. 1. 17.

주요기능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1,413 백만원	1,454 백만원	1,474 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803 백만원	814 백만원	676 백만원

재무현황 (2020. 12. 31. 기준)

자산	3,085백만원
부채	1백만원
자본	3,084백만원

Ⅱ. 검토의견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4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2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993백만 원**

-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2,215백만 원**

- '건전한 문화예술 선도'의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특히 달성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경우 달성군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홍보 및 가치 상승에 기여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문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3,208백만원(군비 3,208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1 예산액 <최종>	2022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합 계		3,212	3,208	3,208			3,208	
인력운영비	1~12월	733	627	627			627	
기본경비	1~12월	449	366	366			366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0	300	300			3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월	400	300	300			300	
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	1~12월	170	200	200			200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12월	75	150	150			150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100	100			10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95	120	120			120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250	250	250			250	
달성음악회	1~12월	0	120	120			120	
새봄맞이 음악회	3~4월	45	200	200			200	
성악중창 페스티벌	1~12월	0	95	95			95	
달성 고유물 수집사업	12월	40	50	50			50	
문화기획지원	1~12월	120	150	150			150	
도동페스타	5~6월	0	130	130			130	
달성군 시니어 합창단 운영	1~12월	0	50	50			50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12월	550	0	0			0	
10주년 기념 백서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1~12월	95	0	0			0	
학술세미나·비전선포식	1~12월	40	0	0			0	

출연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부서 의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1. 3.. ~ ’ 21. 6.)

- 2021년(2020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40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8.16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7.00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6.24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1.40**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2년 출연금 3,208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993백만 원

- 2022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자체사업비 2,215백만 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전원)

구 분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최종> (A)	2022년 예산(안)			
			재단 예산액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전년대비 증감액 (B-A)
총 계	1,962,228	3,212,493	5,079,487	3,208,244	3,208,244	△4,249
기관운영비	927,773	1,182,493	1,659,487	993,244	993,244	△189,249
인력운영비	575,604	732,820	993,835	627,592	627,592	△105,228
기본경비	352,169	449,673	665,652	365,652	365,652	△84,021
자체사업비	1,034,455	2,030,000	3,420,000	2,215,000	2,215,000	185,000
달성 100대 피아노	0	0	650,000	300,000	300,000	300,0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357,479	400,000	650,000	300,000	300,000	△100,000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9,376	170,000	200,000	200,000	200,000	30,000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0	75,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
예술자치구역	128,753	150,000	200,000	100,000	100,000	△50,00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77,420	95,000	120,000	120,000	120,000	25,000
달성 스토리텔링	219,185	250,000	250,000	250,000	250,000	0
달성음악회	0	0	320,000	120,000	120,000	120,000
새봄맞이 음악회	0	45,000	250,000	200,000	200,000	155,000
성악중창 페스티벌	0	0	95,000	95,000	95,000	95,000
달성 고유물 수집사업	0	40,000	100,000	50,000	50,000	10,000
문화기획지원	58,963	120,000	250,000	150,000	150,000	30,000
도동페스타	0	0	135,000	130,000	130,000	130,000
달성군 시니어 합창단 운영	0	0	50,000	50,000	50,000	50,000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83,279	550,000	0	0	0	△550,000
10주년 기념 백서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0	95,000	0	0	0	△95,000
학술세미나 · 비전선포식	0	40,000	0	0	0	△40,000

출연기관 현황

<table>
<tr><td>기 관 명</td><td colspan="3">(재)달성문화재단</td><td>전화번호</td><td>053.659.4271</td></tr>
<tr><td></td><td colspan="3"></td><td>홈페이지</td><td>www.dsart.or.kr</td></tr>
<tr><td>설립근거</td><td colspan="5">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5">2011.05.17. 등기</td></tr>
<tr><td rowspan="12">임원
(21.10.1
현재)</td><td>직책</td><td>성명</td><td colspan="2">주요경력</td><td>임기</td></tr>
<tr><td>이사장</td><td>김문오</td><td colspan="2">달성군수</td><td>재임기간</td></tr>
<tr><td>대표이사</td><td>공석</td><td colspan="2"></td><td></td></tr>
<tr><td>비상임이사</td><td>김철식</td><td colspan="2">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td><td>2020.8.23.~2022.8.22</td></tr>
<tr><td>비상임이사</td><td>도원길</td><td colspan="2">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td><td>2020.8.23.~2022.8.22</td></tr>
<tr><td>비상임이사</td><td>이치우</td><td colspan="2">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td><td>2020.8.23.~2022.8.22</td></tr>
<tr><td>비상임이사</td><td>김정화</td><td colspan="2">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생활음악)</td><td>2020.8.23.~2022.8.22</td></tr>
<tr><td>비상임이사</td><td>전유진</td><td colspan="2">달성군학부모협회 회장</td><td>2020.8.23.~2022.8.22</td></tr>
<tr><td>비상임이사</td><td>한대곤</td><td colspan="2">한창실업(주) 사장</td><td>2021.3.26.~2022.8.22</td></tr>
<tr><td>비상임이사</td><td>방호현</td><td colspan="2">달성군 정책관광국장</td><td>재임기간</td></tr>
<tr><td>감사</td><td>도창곤</td><td colspan="2">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td><td>2020.8.23.~2022.8.22</td></tr>
<tr><td>감사</td><td>박은주</td><td colspan="2">달성군 문화체육과장</td><td>재임기간</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5">○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td></tr>
<tr><td rowspan="4">최근3년간
예산현황</td><td>연 도</td><td>2019년</td><td>2020년</td><td>2021년</td><td rowspan="4">재무현황
2020.12.31
기준</td><td>자산</td><td>9,110백만원</td></tr>
<tr><td>예산액</td><td>4,866</td><td>6,692</td><td>7,020</td><td>부채</td><td>1,727백만원</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3,393</td><td>5,437</td><td>4,782</td><td>자본</td><td>7,383백만원</td></tr>
</table>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Ⅱ. 검토의견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 가치 증대와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함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 제고를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2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3,000백만 원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0백만 원
-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달성군 출연금 3,000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 기본재산 이자수익을 통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table>
<tr><td>출 연
대 상</td><td>○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27,832백만 원</td></tr>
<tr><td>출 연
사업비</td><td>○ 출연 예정금액 : 3,000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2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r><td>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2022년</td><td>3,000</td><td>3,000</td><td>-</td><td>-</td><td>3,000</td><td>-</td></tr>
</table></td></tr>
<tr><td>출 연
필요성</td><td>○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td></tr>
<tr><td>근 거
법 령</td><td>○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td></tr>
<tr><td>사업부서
의 견
(총평)</td><td>○ 우리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td></tr>
</table>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3,000백만 원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00백만 원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출연액	2021년 출연액(최종) (A)	2022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 (C-A)
총 계	4,310	3,260	3,000	3,000	0	△26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4,310	3,260	3,000	3,000	0	△26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982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 4. 4. 법인성립년월일 : 2000. 4. 26.		

임원 (2021.11.1. 현재)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문호	달성군수(당연직)	2010. 7.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송정근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박명규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서정우	前 달성군의원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이대현	농업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김동조	前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박지팔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읍번영회장	2019. 6. 21~2023. 6. 20
	비상임이사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1. 1. 1~2024.12.31
	비상임이사	홍진웅	화원새마을금고 이사장	2021. 1. 1~2024.12.31
	비상임감사	채수열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21. 6.21 ~2023. 6.20
	비상임감사	배경옥	당연직(달성군 회계과장)	2021. 7. 1~2023. 6.30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무현황 2020.12.31. 기준	자산	24,968백만원
	예산액	3,626백만원	4,649백만원	3,769백만원		부채	394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3,320백만원	4,310백만원	3,260백만원		자본	24,574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Ⅱ. 검토의견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연금 3,000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2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 세입예산은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및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최대한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노후시설,생활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확장적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예산을 편성함

4. 예산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816,000	100.00	
일 반 회 계	814,900	99.87	
특 별 회 계	1,100	0.13	
기 타 특 별 회 계	1,100	0.13	
의 료 급 여 기 금	694	0.08	
기 반 시 설	50	0.01	
치 수 사 업	356	0.04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816,000	813,000	3,000	0.37
일반회계	합 계	814,900	804,900	10,000	1.24
	지 방 세 수 입	198,695	193,866	4,829	2.49
	세 외 수 입	38,097	34,437	3,660	10.63
	경상적 세외수입	24,467	24,761	△294	△1.19
	임시적 세외수입	7,845	5,199	2,646	50.9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785	4,477	1,308	29.24
	지 방 교 부 세	169,347	143,624	25,723	17.91
	조 정 교 부 금 등	35,198	32,479	2,719	8.37
	보 조 금	366,930	337,096	29,834	8.85
	국고 보조금 등	240,745	229,409	11,336	4.94
	시·도비보조금등	126,185	107,687	18,498	17.18
	지 방 채	1,150	0	1,15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83	63,398	△57,915	△91.35
특별회계	합 계	1,100	8,100	△7,000	△86.42
	세외수입	37	71	△34	△48.42
	경상적세외수입	6	40	△34	△85.96
	임시적세외수입	31	31	0	0
	보 조 금	604	604	0	0
	국고보조금등	483	483	0	0
	시·도비보조금등	121	121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9	7,425	△6,966	△93.82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16,000	813,000	3,000	0.37
일반회계	계	814,900	804,900	10,000	1.24
	일반공공행정	44,083	51,152	△7,069	△13.82
	공공질서및안전	5,335	2,911	2,424	83.28
	교 육	13,053	11,102	1,951	17.57
	문화 및 관광	34,236	34,356	△120	△0.35
	환 경	27,926	25,959	1,967	7.58
	사 회 복 지	341,930	317,853	24,077	7.57
	보 건	29,026	20,358	8,668	42.58
	농림해양수산	52,858	56,039	△3,181	△5.6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49	3,708	△659	△17.78
	교통및물류	89,791	103,996	△14,205	△13.66
	국토및지역개발	66,627	63,877	2,750	4.31
	예 비 비	8,677	17,498	△8,821	△50.41
	기 타	98,309	96,091	2,218	2.31
특별회계	계	1,100	8,100	△7,000	△86.42
	환 경	0	2,740	△2,740	순감
	사 회 복 지	500	500	0	0
	국토및지역개발	162	427	△265	△62.16
	기 타	438	4,433	△3,995	△90.11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16,000	813,000	3,000	0.37
일반회계	계	814,900	804,900	10,000	1.24
	인 건 비	89,234	90,199	△965	△1.07
	물 건 비	41,207	42,328	△1,121	△2.65
	일 반 운 영 비	30,588	32,022	△1,434	△4.48
	여 비	2,449	2,615	△166	△6.34
	업 무 추 진 비	737	735	2	0.29
	직무 수행 경비	2,565	2,510	55	2.18
	의 회 비	582	579	3	0.58
	재 료 비	2,149	2,255	△106	△4.70
	연 구 개 발 비	2,137	1,612	525	32.59
	경 상 이 전	470,663	427,614	43,049	10.07
	자 본 지 출	203,235	225,130	△21,895	△9.73
	시설비및부대비	182,232	205,450	△23,218	△11.30
	민간 자본 이전	11,498	9,151	2,347	25.6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26	4,519	307	6.8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222	680	542	79.64
	자 산 취 득 비	3,415	5,330	△1,915	△35.93
	기타자본이전	42	0	42	순증
	융자 및 출자	0	10	△10	순감
	내 부 거 래	1,882	1,809	73	4.02
	예비비 및 기타	8,679	17,810	△9,131	△51.27
특별회계	계	1,100	8,100	△7,000	△86.42
	인 건 비	341	343	△2	△0.77
	물 건 비	37	27	10	37.40
	경 상 이 전	488	480	8	1.65
	자 본 지 출	141	371	△230	△61.89
	내 부 거 래	0	6,750	△6,750	순감
	예비비 및 기타	93	129	△36	△27.72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8,130억원** 보다 **30억원**(0.37%)이 늘어난

8,16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8,049억원** 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8,149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81억원** 보다 **70억원**이 감소한 **11억원입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있어

○ **지방세** 1,986억 9천만원,

세외수입 381억원

지방교부세 1,693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등 352억원,

보조금은 3,669억 3천만원,

지방채 11억 5천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억 8천만원 등

총 8,14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전년대비 4억6천만원이 감소한 106억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17억3천만원 증가한 598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6억8천만원 감소한 371억원

담배소비세는 년대비 7억2천만원 증가한 162억원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58억 9천만원 증가한 139억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6억 3천만원 증가한 581억원 등
총 48억 3천만원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1,98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36억 7천만원이 증가한
38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4억 7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8억 5천만원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은 57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57억2천만원이 증가한
1,69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조정교부금등**은 27억 1천만원이 증가한
3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113억 4천만원 늘어난
2,407억 4천만원,
시 · 도비보조금등 185억원이 늘어난 1,261억 9천만원으로
총 3,66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1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능별 분류에서는

-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41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3억원
- 교육분야에 131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2억원
- 환경분야에 279억원
- 사회복지분야에 3,420억원
- 보건분야에 290억원
-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529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30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에 898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66억원
- 예비비·기타 1,0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보수 535억 2천만원, 기타직보수 29억 6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0억 5천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7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1.07% 감소한 89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연구개발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의 감소로 총 11억(2.65%)이 감소한 41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021년대비 430억 5천만원이 늘어난
4,70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1,822억 3천만원,
민간자본이전 115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8억 3천만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2억 2천만원, 자산취득비 34억원 등
총 2,03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 3천만원,
기금전출금에서 18억 5천만원 등 1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읍·면 예산의 경우**

- 읍·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
 읍장은 360만원, 면장은 240만원,
 다사읍의 경우 과장 240만원, 다사읍장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읍은 3억5천만원, 면은 2억8천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고,

- 전체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청사관리 등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화원 59억여원, 논공 44억여원, 다사 61억여원,
 유가 39억여원, 옥포 38억원, 현풍 38억여원, 가창 28억여원,
 하빈 26억여원, 구지 32억여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읍면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3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70억원이 감소된 1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6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천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억원이 감소된 3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22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나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부분 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 세외수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기타 사용료의 감소가 예상되나 진천천 유지용수 관리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증가, 지방교부세감소분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은
 코로나 19에 따른 지원책,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지출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 코로나19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정부의 주요복지정책에 따른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비 등 의무적 부담경비 증가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생활 SOC 인프라 확충,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지원 등 농축산 부문 경쟁력 강화, 화석박물관 건립, 비슬 관광지 조성,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 등 지출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41.96%로 가장 비중이 많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이 11.02%, 국토 및 지역개발이 8.18%이고,
 농림해양수산이 6.49%, 일반공공행정이 5.41%,
 문화 및 관광이 4.20% 순입니다.

-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의 절차이행에 노력하였으며 사전절차에 누락된 대상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애로사항 해소,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 균형 예산 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실시전 주민공청회 실시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사업진행이 효율적으로 되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증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보상비,공사비 순으로 연도내에 집행 가능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총액 범위 준수 및 지원 근거에 맞게 내실있는 지원 및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기금의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018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20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위생과	
자활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활용을 위하여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방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8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과	
체육진흥기금	1999	군민들의 체력 증진 및 지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0조	문화체육과	

4. 기금의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예치금 회수	이 자	기 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계	136,220,239	1,851,723	29,000	133,249,408	1,027,108	63,000	136,220,239	1,291,400	30,000	134,496,196	364,103	38,5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4,676,912	0	0	113,866,912	810,000	0	114,676,912	0	0	114,676,912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883,101	0	0	6,831,905	51,196	0	6,883,101	0	0	6,518,998	364,103	0
식품진흥기금	189,398	0	29,000	116,398	6,000	38,000	189,398	71,400	0	79,458	0	38,540
자활기금	905,601	0	0	874,991	5,610	25,000	905,601	10,000	30,000	865,601	0	0
재난관리기금	12,486,501	1,851,723	0	10,488,279	146,499	0	12,486,501	1,090,000	0	11,396,501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307,299	0	0	305,034	2,265	0	307,299	100,000	0	207,299	0	0
체육진흥기금	771,427	0	0	765,889	5,538	0	771,427	20,000	0	751,427	0	0

5.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33,283,948	2,973,231	1,724,043	134,533,136	1,249,1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3,866,912	810,000	0	114,676,912	8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831,905	51,196	364,103	6,518,998	△312,907
식품진흥기금	153,338	73,000	109,940	116,398	△36,940
자활기금	872,591	33,010	40,000	865,601	△6,990
재난관리기금	10,488,279	1,998,222	1,090,000	11,396,501	908,222
옥외광고발전기금	305,034	2,265	100,000	207,299	∧97,735
체육진흥기금	765,889	5,538	20,000	751,427	△14,462

6. 기금별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지원대상

- 세입감소 또는 심각한 경제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 2022년 주요사업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14,676,912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83,388,122	113,866,912	114,676,912	81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지원대상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2022년 주요사업

- 통합계정 예치금 6,518,998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0	6,831,905	6,518,998	△312,907	

□ 식품진흥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자 및 관련 단체
- 부정 · 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 2022년 주요사업

-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홍보 물품 등 지원 3,000천원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 (200개소) 20,000천원
- 제9회달성(향토 · 전통)음식경연대회 지원 30,0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지정업소 대상 저염식 요리강습 7,000천원
-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용역(35개소) 4,9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53,337	153,338	116,398	△36,940	
예치금	대구은행	90,000	90,000	9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63,337	63,338	26,398	△36,940	보통예금

□ 자활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 2022년 주요사업

- 점포 전세금 대여 30,000천원
-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및 소양직무 교육 1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841,150	872,591	865,601	△6,990	

□ 재난관리기금

○ 지원대상

- 재해예방 홍보 및 긴급복구

○ 2022년 주요사업

- 재해예방 홍보(팜플렛, 현수막 등)제작 10,000천원
- 감염병 확산방지 물품 및 약품 구입 20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200,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지원 200.000천원
- 읍면별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450,000천원
- 제설장비 구입 3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9,702,894	10,488,279	11,396,501	908,222	

□ 옥외광고발전기금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2022년 주요사업

-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207,299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10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402,020	305,034	207,299	△97,735	

□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격려
- 유소년·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 기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 2022년 주요사업

- 지역 체육진흥 사업 20,000천원
- 예치금 751,427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예치금	대구은행	776,625	765,889	751,427	△14,462	

7. 종합검토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 · 운용하는 자금으로,

○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 현재 우리군의 기금은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특수한 목적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등 모두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은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코로나 19 등 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비로 사회적 가치실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매년 반복적인 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사업 중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도 기금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기금 일몰제를 준수하는 등 기금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3. 제안사유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지원사업 (안 제1조~제3조)

○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 (안 제4조~제6조)

5.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 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에 군수는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는 협의회 사업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제5조와 제6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본 제정 조례안은 법규의 조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3. 제안사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1조～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안전교육 등, 주차시설 설치 규정 (안 제4조～제6조)

○ 이용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등을 규정 (안 제7조～제9조)

○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등 규정 (안 제10조~제13조)

5.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달성군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 에 대한 정의, 군수의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과 군민의 안전의무 준수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제6조에는 안전교육 등 실시, 주차시설 설치 사항
- 제7조~제9조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등
- 제10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11조~제1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참고자료

2) 조례안 1부.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Mobility · PM) 운영 현황

(2021. 8. 31 기준)

구분 / 업체명	알파카 (주황색)	디어 (노란색)	지쿠터 (연두색)	Beam모빌리티 (보라색)
운영시기	'21. 3.	'21. 5.	'21. 6.	'21. 7.
운영대수	127대	60대	90대	200대
운영구역	테크노폴리스(90) 구지면(17) 달성1차산업단지(20)	다사읍(60)	테크노폴리스(90)	다사읍(200)
담 당 자	송현철팀장	유도훈팀장	김동현팀장	김혜정
전화번호	010-4508-7565	010-9962-9002	010-8453-2733	010-3202-1029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구분 / 처벌규정		현 행	개 정
시 행 일		'20.12.10	'21.05.13
교통수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보도' 통행불가; 자전거도로 없을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	1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1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4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	2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	10만원 범칙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 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 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 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 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그 사업 시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시설 설치) ① 군수는 공원, 관공서,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소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최상국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 제53조, 제54조, 제56조 (안 제1조)

○ 제134조 → 제150조 (안 제6조제1항)

○ 제41조 → 제49조, 제127조 → 제142조 (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안 제5조 신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에서 “제53조, 제54조, 제56조” 로 인용 조항 개정
- 제5조에는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을 신설
- 제6조제1항 중 “제134조” 를 “제150조” 로 하고
- 제6조제2항 중 “제41조” 를 “제49조” 로, “제127조를 제142조” 로 인용 조항 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제45조, 제47조”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34조”를 “제150조”로 하고, 제2항중 “제41조”를 “제49조”로, “제127조”를 “제14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임시회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제150조----------. ② ---------- 제49조----------제142조---------- ----------.
제6조(준용규정) (생략)	제7조(준용규정) (현행 제6조와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를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및 영리거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개정(안 제1조,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안 제7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주기적 확인 및 관리(안 제8조)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안 제9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를 개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및 영리거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에 상위법의 근거조항 개정
- 제7조에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
- 제8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주기적 확인 및 관리
- 제9조에 공공단체의 범위 및 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의장에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6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은 의원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신고 내역을 점검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6조---------- ---------- ---------- ---------- ---------- ---------- ----------.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겸직신고)** ①---------- ----------제43조제1항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4조제2항---------- ---------- -----. ⑥ 의장은 의원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신고 내역을 점

	검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생략) <신 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 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①~② (생략) <신 설>	**제9조(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조~제3조)

○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안 제4조~제12조)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 (안 제13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 제4조~제12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등
- 제13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

○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과 시설을 두고 운영하거나 그에 대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및 문화유적지 시찰비용 지원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공무원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 때문에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조정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인 이내(여성 공무원 1인 이상 포함)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인

⑤ 위원장은 필요시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관리·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달성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달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62조 → 제71조로 세부근거 개정(안 제1조)

○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및 권고안 반영(안 제2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62조” 를 “제71조” 로 세부근거 조항 개정
- 제2조에는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 및 권고안을 반영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62조”를 “제71조”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제2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1조---------- ---------- ----------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생략)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생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2조)

○ 여비의 지급구분 및 운임 숙박비 지급 (안 제3조~제4조)

○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안 제5조)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안 제6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공무원여비규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제2조에는 목적,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제3조~제5조에 여비의 지급, 운임 숙박비 지급,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
- 제6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1.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

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 제150조제3항 으로 세부근거 개정 (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64조 → 제73조 으로 개정(안 제3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을“제150조제3항”으로 세부 근거조항 개정
- 제3조의「지방자치법」“제64조”를 “제73조”로 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을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64조”를 “제7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0조제3항---------- ---------- ----------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생략)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④ (생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73조--------. ④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복무선서, 책임완수 (안 제1조)

○ 비밀엄수,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안 제2조 ~ 제17조)

○ 휴가, 병가, 특별휴가 등 규정 (안 제18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제3조에 목적, 복무선서, 책임완수
- 제4조~제11조에 비밀엄수,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등
- 제12조~제18조까지는 휴가, 병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 검토결과 모두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법률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고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남성공무원의 경우 3일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이내)
3.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4. 장기재직휴가는 반드시 의회사무국장의 사전 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5. 의회사무국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휴가허가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 장기재직휴가는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그 사용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지방자치법」제41조 → 제49조(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146조 → 제163조(안 제3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제49조”로
- 제3조제3호 중「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제163조”로 인용 조항을 변경

○ 검토의견

- 상위법「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 ---------- ---------- ---------- ----------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 ---------- ---------- --. 1.~2. (현행과 같음) 3. --------- 제163조-------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 제33조 → 제40조(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6] → [별표5] (안 제4조제3항제1호)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 인용 조항 정비

· 제1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33조”를“제40조”로 변경

· 제4조제3항제1호 중 “[별표6]”을 “[별표5]”로 변경

○ 검토의견

- 상위법「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근거한“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를 “제40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 ---------- ---------- ---------- ---------- ----------.
제4조(여비지급) ①~② (생략)	제4조(여비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무여행 중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국외 여비를 지급한다.	③ ---------- ---------- ----------.
1. 항공운임, 준비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6]	1. ---------- ----------[별표 5]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조례의 제·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5.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
- 제2조~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
- 제4조~제6조까지 조례의 제·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제12조에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검토의견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제102조 및 제103조(안 제1조)

○ 정책지원관 신설

- 명칭, 직무범위, 배치 사항 등을 규정(안 제5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를 “제102조 및 제103조” 로 인용조항을 정비
-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 신설로 인한 명칭, 직무범위, 배치 사항 등을 규정

○ 검토의견

- 상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02조 및 제103조——————————————— ——————————————— ——————————————— ———————————.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 제6조 (생 략)	제6조 · 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지방자치법」제42조 → 제51조(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113조 → 제126조, 제116조 → 제129조(안 제2조제3호)

- 법 제117조 → 제131조(제2조제5호)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 개정

○ 주요내용

-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를 “제51조” 로
- 제2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에서 “제126조” 로, “제116조” 에서 “제129조” 로
- 제2조제5호 중 “제117조” 를 “제131조” 로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13조”를 “제126조”, “제116조”를 “제129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17조”를 “제13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1조---------- ---------- ---------- ---------- ---------- ---------- ----------.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생략)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2조(범위)** ---------- ---------- ---------- ---------- ---. 1. ~ 2.(현행과 같음) 3. ---------- ---제126조----제129조------ ---------- 4. (현행과 같음) 5. -- 제13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 「지방자치법」 제41조 → 제49조(안 제1조)
- 법 제41조 → 제49조(안 제2조)
- 법 제27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법 제27조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안 제6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제49조”로 각각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개정
-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인용 조항을 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9조----------.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3. (생략)	**제2조(부과대상)** ----------제49조----------. 1.~ 3. (현행과 같음)
제6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9조(안 제1안)
-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26조, 제116조→제129조, 제117조 →제131조, 제120조→제134조(안 제5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법」 법 제146조 → 제163조(안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 법 제104조 → 제117조(안 제5조제1항제4호)
- 「지방자치법」 법 제9조 → 제13조(안 제6조)
- 「지방자치법」 법 제41조 → 제49조(안 제9조의2)
- 「지방자치법」 법 제41조 → 제49조(안 제9조의6)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 주요내용

-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제49조”로 개정
- 제5조제1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제126조”, “제116조”를 “제129조”, “제117조”를 “제131조”, “제120조”를 “제134조”로 개정
-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개정
- 제5조제1항제4호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개정
- 제6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3조”로 개정
- 제9조의2 중 “제41조”를 “제49조”로 개정
- 제9조의6 제1항 중 “제41조”를 “제49조”로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를 “제126조”, “제116조”를 “제129조”, “제117조”를 “제131조”, “제120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조의6 제1항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 ---------- ----------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략) 1. 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군의 하부 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 1.--- 2.---------- ----제126조----제129조----- ---------- --제131조--제134조--------- -------- 3.----------제163조-- --------- 4.---제117조---------- ---------- ---------- ----------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① ----------제13조----------.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증언요구 및 선서)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증언요구 및 선서)** ----------제49조----------.
제9조의6(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생략)	**제9조의6(고발의 절차)** ① ---------제49조----------. ②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최상국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달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 등 (안 제2조 ~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안 제4조 ~ 제5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1조에는 목적
- 제2조~제3조에 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 제한의 사유
- 제4조~제5조에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규칙안 1부.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하며,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서도원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 (안 제3조, 제4조)

○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안 제5조, 제6조)

○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안 제7조)

○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 (안 제8조, 제9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제4조에 근무상황부 등의 작성 및 비치, 근무상황의 관리
- 제5조~제6조에 휴가, 출장의 절차
- 제7조~제9조까지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업무의 인계 및 서류 보관 등을 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규칙안 1부.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작성,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이하 "근무상황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카드"라 한다)를 작성, 비치 및 관리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 파견 ·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 지각 · 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그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비치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서도원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규칙 근거를 개정하고, 기록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개정(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0조, 안 제82조)

○ 표결방법 개정(안 제41조)

○ 회의록 작성방법 등 개정(안 제48조)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안 제52조의 2, 제52조의 3)

○ 상위법령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안 제83조의 2)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0조, 안 제82조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개정
- 제41조에 표결방법 개정
- 제48조 회의록 작성방법 등 개정
- 제52조의 2, 제52조의 3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 제83조의 2, 상위법령에 근거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 검토의견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규칙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하고,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하며, “의회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부의장”을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각각 “사고 때문에”로 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의 미완료안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 중 “특별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2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미치거가”를 “미치거나”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의제의”를 “의제에”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9조 후단 중 “투표에 의하여”를 “투표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40조 중 “표결에 있어서”를 “표결할 때”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친 안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49조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심사함에 있어서”를 “심사할 경우”로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를 각하할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해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그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를 해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가할 수”를 “보태거나 더하여 할 수”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 중 “본회의에 부의할”을 “본회의에 부칠”이라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본회의에 부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부의할 수”를 “부칠 수”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지체없이”를 “늦추지 말고 바로”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본회의에 부친다”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66조의2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시간”을 “질문을 끝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하고, “송부하여야”를 “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체없이”를 “늦추지 말고 바로”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늦추지 말고 바로”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79조”를 “제91조”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사고에 의하여”를 “그 밖에 사고 때문에”로 한다.

제71조제3항 후단 중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를 “본회의에 부쳐야”로 한다.

제74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0조제5호 및 제8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86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83조”를 “제95조”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로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동조”를 “같은 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친 때도 또한 같다.

제83조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 · 공무원
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⑧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⑨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늦추지 말고 바로”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를 “본회의에 부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83조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회사무국장----------.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개회식)** ----------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사고 때문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사고 때문에----------

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생략) 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해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 ③~④ (생략)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해당----------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에 따른-- ---------- ----------제72조제1항 ----------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완료안건)**----- ---------- ---------- ---------- --.
제20조(의안의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위원회 라 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 ---------- ---------- ---------- ---- 특별위원회 ----------

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⑤ (생략)	----------. ②~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조례안 예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조례안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 ---------- ---------그 밖의---------- ---------- ----------.
제28조의 2(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8조의 2(자유발언)** ① ---------- ---------- --- 범위에서 ----- --------- 그 밖에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가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미치거나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의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 의제에 ----------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략)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9조(표결의 참가)** ---------- ---------- --- 투표의 방법으로 ----------.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할 때 ---------- .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삭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③ ---------- ---------- ----------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④ (삭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각호에 따라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8. (생략)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13.(생략) 14.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1.~8. (현행과 같음) 9.회의에 부친 안건------- 10.~13.(현행과 같음) 14.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하다. ② (생략)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의회사무국장 ----------.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	**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그 밖에 ----------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⑤ (생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따라 ---------- ---------- ---------- ----------. ③------ 따라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 의회사무국장----------.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심사할 경우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를 각하할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 회의에 부쳐 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2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해

	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그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를 해당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공청회) ①(생략)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56조(공청회)** ①(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생략)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태거나 더하여 할 수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항을 기재한다. 1.~9. (생략)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 명과 그 내용 11.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 1.~9. (생략) 10.---------- 본회의에 부칠 ---------- 11.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 그 밖에---------- ----------. ----------
제61조(예산안등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회에 따라 위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1조(예산안등 심의)** ①--------- ---------- 본회의에 부친다.---------- ----------
제63조(예산안 등의 의결) ①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3조(예산안 등의 의결)** ①------ ---------- 부칠 수 ---.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의회에 결산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

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회에 따라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 -- 늦추지 말고 바로---------- ---------- ----------본회의에 부친다.---------- ---------- ---------- ---------- ----------.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생략)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생략) 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행하되,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각 의원별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범위에서 ---------- ----------. ③ ------- 규정에 따른 -------- ---------- ---------- ---------- ----------. ④ ---------- --- 질문을 끝마치는데 걸리는 시간 ---------- ---------- ---------- --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 ---. ⑤ ---------- ----------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 늦추지 말고 바로 ----------.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③ (생략)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 ---------- 늦추지 말고 바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제91조----- 따라 ---------- ---------- ---------- ---------- ----------. ②---------- 그 밖에 사고 때문에---------- ---------- ----------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② (생략)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본회의에 부쳐야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 ----. 1. (현행과 같음)

2.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5. (생략) 6.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2.---------- ---------- 그 밖의 ---------- 3.~5. (현행과 같음) 6.그 밖에 ----------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그 밖에 ---------- ----------.
제78조(방청석의 교부 및 기재) ① (생략)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④ (생략)	**제78조(방청석의 교부 및 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따라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③ (생략)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 1.~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4. (생략) 5.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7. (생략) 8.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4. (생략) 5.--- 그 밖에 -------- 6.~7. (생략) 8.그 밖에---------- ------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제98조----------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따라 ----------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제95조------- 따라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따른 ---------- 같은 조--- ------.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친 때도 또한 같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따른 ---------- 같은 조 ----------.
<신 설>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공무원 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⑧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⑨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 늦추지 말고 바로 본회의에 부쳐 ----------. ②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등 (안 제2조~제4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는 목적
- 제2조~제4조에 법정대리, 지정대리 등을 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규칙안 1부.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결원 등"이라 한다)가 있어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 그 순위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장을 대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총칙 (안 제1조)

○ 명예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8조)

○ 조기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는 총칙
- 제2조~제8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지급심사, 절차 등
- 제9조~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신청, 지급심사, 절차 등을 규정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규칙안 1부.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가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신청기간은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1월 22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안 제1조~제2조)

○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결격사유, 시험위원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19조)

○ 합격자 등록 및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제22조)

○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특별승진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6조)

○ 자격증, 근무경력, 실적 가산점 등 평정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 제29조)

○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제31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제2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
- 제3조~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
- 제5조~제19조까지 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결격사유, 시험위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제20조~제22조에 합격자 등록 및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제23조~제26조에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특별승진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제27조 ~ 제29조에는 자격증, 근무경력, 실적 가산점 등 평정에 관한 사항
- 제30조 ~ 제31조에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규칙안 1부.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의결 대상 안건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

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직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 학력 ·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대군인으로 보는 전역예정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등의 응시 당시 전역예정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대군인으로 보는 경우는 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등의 최종시험예정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법적 · 경제적 · 사회적 이해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 ·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의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모든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와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별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3장 임용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의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

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

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등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가점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및 요건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공포 '21. 1.12. / 시행 '21. 7.13.)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안 제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안 제7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4조)

: 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제정 '21.1.12. / 시행 '21.7.13.)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33개 조문을 19개 조문으로 정비(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반영)

○ 주요내용

-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규정 신설

- 제3조에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 규정
-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재공모·접수기간 등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의 경우
-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사항
- 제8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민간위원 위촉 대상 세부화 및 목록에 의한 심의대상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복된 내용은 정비하려는 건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향후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고발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리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들로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해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

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구축 및 시행될 때까지 운영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세부근거 신설 및 개정

○ 2022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주요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구 개편

4.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세부근거 신설 및 개정

-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등 인용조문 추가 (안 제1조)
- 제113조 → 제126조로 개정(안 제10조)
- 제113조 → 제126조로 개정(안 제14조)
- 제4조의2 →제7조로 개정(안 제18조)
- 제115조 → 제128조(안 제21조)로 개정

○ 국책사업 및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 신설 및 명칭변경
- 화훼 → 정원으로 명칭변경(안제6조(경제환경국)제2항제5호) :
- 감염예방 → 감염병예방으로 명칭변경과 감염병관리 신설(안 제11조(소장)제3항제1호)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세부근거 마련 및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에서는 인용조문 개정
- 제6조제2항제5호에 공원녹지과 “화훼팀” 을 “정원팀” 으로 팀 명칭변경
- 제11조제3항제1호에 보건과 “감염예방팀” 을 “감염병예방팀” 으로 팀 명칭변경과 “감염병 관리팀” 도 신설

○ 검토의견

- 상위법「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로 한다.

제6조(경제환경국)제2항제5호 중 “녹지 · 화훼 · 산림조성 · 산림보호 · 공원개발 · 공원관리”를 “녹지 · 정원 · 산림조성 · 산림보호 · 공원개발 · 공원관리”로 한다.

제10조(설치)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1조(소장)제3항제1호 중 “보건행정 · 의약관리 · 감염예방 · 진료지원”을 “보건행정 · 의약관리 · 감염병예방 · 감염병관리 · 진료지원”으로 한다.

제14조(설치)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8조(설치)제1항 중 “제4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21조(설치)제1항 중 “제115조”를 “제12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의 규정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
제6조(경제환경국)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녹지·**화훼**·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정원**·----------
제10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0조(설치) ① ----------**제126조**---------.
제11조(소장)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예방·진료지원**	제11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병예방·감염병관리·진료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설치) ① - **제126조** ----------.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	제18조(설치) ① --------- **제7조**----------.
제21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	제21조(설치) ① - **제128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정원 기준 세부근거 마련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4.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세부근거 마련
- 조항 내「지방자치법」제125조 인용조문 추가(안 제1조)

○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원 조정
-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986명 → 1,006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72명 → 989명(안 제2조제1호)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17명(안 제2조제2호)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 정원 : 986명 → 1,001명(증 15)
- 본청 정원 : 630명 → 639명(증 9)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4명 → 17명(증 3)
- 직속기관 정원 : 109명 → 112명(증 3명)
- 읍 및 그 출장소 정원 : 178 → 177(감 1명)
- 면 정원 : 55 → 56(증 1명)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 변동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에서는 조항 내「지방자치법」제125조 인용조문 추가
- 제2조에는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을 986명에서 1,001명으로 증원하고
 - 제1호(집행기관의 정원) : 972명 → 984명
 - 제2호(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17명
- 별표3에서는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를 개정
 - 총 정원 : 986명 → 1,001명(증 15명)
 - 본청 정원 : 630명 → 639명(증 9명)
 - 의회사무국 정원 : 14명 → 17명(증 3명)
 - 직속기관 정원 : 109명 → 112명(증 3명)
 - 읍 및 그 출장소 정원 : 178 → 177(감 1명)
 - 면 정원 : 55 → 56(증 1명)

○ 검토의견

- 상위법「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업무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점, 행정서비스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현실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 호 외의 부분 중 “986” 을 “1,001” 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중 “972” 을 “984” 로 하며, 제2호 중 “14명” 을 “17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98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7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제2조(정원의 총수) ----------1,001명----------. 1. ---------- : 984명 2. ---------- : 17명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986~~1,001	~~630~~639	~~14~~17	~~109~~112	~~178~~177	~~55~~5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57~~969	~~625~~634	~~14~~17	85	~~178~~177	~~55~~56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4~~42	28	2	~~4~~2	7	3
6급이하 계	~~904~~918	~~591~~600	~~11~~14	~~80~~82	~~170~~169	~~52~~53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4~~27			~~24~~27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25			~~22~~25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2022년 기준인건비 통보와 관련 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공무원 증원 15명(5급 -2, 6급 +1, 7급 +4, 8급 +3, 9급 +6, 지도직 +3)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3,053,663천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3,053,663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3,053,663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 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 입		**566,047**	**587,557**	**609,884**	**633,059**	**657,116**	**3,053,663**
지 방 세		566,047	587,557	609,884	633,059	657,116	3,053,663
의존재원							
세 출		**566,047**	**587,557**	**609,884**	**633,059**	**657,116**	**3,053,663**
인 건 비		566,047	587,557	609,884	633,059	657,116	3,053,663
재원 조달		**566,047**	**587,557**	**609,884**	**633,059**	**657,116**	**3,053,663**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566,047**	**587,557**	**609,884**	**633,059**	**657,116**	**3,053,663**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현행화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17조로 세부근거 개정 및 군수권한의 사무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제1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제2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별표]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부서 간 업무 현행화[별표]

-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업무 이관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유류금품의 처분 업무 추가 : 생활보장과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개정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별 인용조문 개정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문구 삭제
-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 문구 삭제와 [별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표] 삭제
-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업무 추가 및 소관부서 변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업무 이관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유류금품의 처분(추가) : 생활보장과

○ 검토의견

- 상위법「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104조” 를 “제117조” 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읍 · 면장” 을 “읍 · 면장” 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중 “의회사무국장, 읍 · 면장” 을 “읍 · 면장”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의 규정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117조----------읍·면장----------.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의회사무국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읍·면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4.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17조로 세부근거 개정(안 제1조)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별 인용 조문을 제104조에서 제117조로 세부근거 조항 개정

○ 검토의견

- 상위법「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104조” 를 “제117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 제117조 ----------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인구정책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별표] 인구정책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6조제1항) - 신설

○ 사업수행 사무의 위탁대상, 수탁자에 예산 지원(안 제6조제2항)

○ 사업추진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함(안 제6조제3항) - 신설

5.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달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6조제1항에 [별표] 인구정책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신설
- 제6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기업 · 법인 · 단체 ·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6조제3항에 세부 사업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별표] **인구정책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지원 대상 및 내용
결 혼 지 원 사 업	**○ 신혼부부 숙박권 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하는 가정 -(지원내용) 호텔아젤리아 숙박권 및 식·음료 이용권 지급 **○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혼주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비부부 -(지원내용) 호텔아젤리아 대관료 및 본식 스냅 촬영 비용 **○ 혼인신고 축하 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하는 가정 -(지원내용)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 축하용품지원

출 산 지 원 사 업	○ **출생축하 액자 지급**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의 주소를 달성군으로 주민등록하는 출생아 가정 -(지원내용) 출생축하 메시지와 아기 사진을 넣은 액자 지급
다자녀 가 정 지 원 사 업	○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연 1회 캠핑카 대여비의 90% 이내 지원

○ **검토의견**

-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군수는 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역인구정책 사업부서에서는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각각의 세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표]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7.(생략)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 설> [별표] <신 설>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 [별표]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1.~ 7.(현행과 같음) ②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 인구정책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제6조제1항 관련) 구분 \| 지원 대상 및 내용 결혼 지원 사업 \| ○ **신혼부부 숙박권 지원** -(지원대상)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하는 가정 -(지원내용)호텔아젤리아 숙박권 및 식음료 이용권 지급 ○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지원** -(지원대상)본인 또는 혼주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비부부 -(지원내용)호텔아젤리아 대관료 및 본식 스냅 촬영 비용 **○ 혼인신고 축하 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하는 가정 -(지원내용)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서비스, 축하용품지원
출산 지원 사업	**○ 출생축하 액자 지급**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의 주소를 달성군으로 주민등록 하는 출생아 가정 -(지원내용) 출생축하 메시지와 아기 사진을 넣은 액자 지급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 다둥이 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 -(지원대상)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연 1회 캠핑카 대여비 90% 이내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

○ 의견제출 방법 (안 제6조)

○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및 결과 통보(안 제7조~안 제9조)

○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 (안 제10조~안 제12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함
- 제5조에서 제7조에 의견제출 제외 대상,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제출 주관부서 지정,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의견의 반영
- 제11조에서 제12조에 차별대우 금지, 비밀 준수의 의무 등

○ 검토의견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해당 규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주관부서 지정) 군수는 의견제출서의 처리를 위해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1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주민의 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시행 '22. 1.13.)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 연령 하향 조정 및 준용 조항 정비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정비
-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

○ 검토의견

- 상위법인「지방자치법」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2021-159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달성군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 ---------- 18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 수수료 면제 개선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공평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제증명 등 수수료를 취지에 맞게 변경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

4.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방법의 변경(안 제5조제1항)

○ 수수료의 감면 등 확대(안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1, 별표 2)

5.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에 근거한 민원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고,
- 국가보훈처 수수료 면제 개선 추진으로 지자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가족을 추가하여 지원 확대함
-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별표1), 정보공개 수수료(별표2)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에서는 수수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중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을 각각 “유족 또는 가족” 으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 에서 정한 금액으로, 별표 2(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로 규정을 정비함

○ 검토의견

- 상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정비 및 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각각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수수료 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4. 주요내용

○ 수입증지의 적용범위(안 제3조)

5.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수수료 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에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

○ **검토의견**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된 조항을 정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2021. 12. 23.)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심의회 구성의 조문 정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변경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표현 등 용어 정비

○ 정보공개심의회 간사, 서기 지정

5.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2.23.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5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함으로써 구체화하였고
- 제7조에서는
 ·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심의회 구성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변경
 · 정보공개심의회 간사, 서기 지정(신설)
- 제8조에 심의회의 기능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규정
- 그외, 각 조례 조문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 정비

○ 검토의견

- 상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을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각각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의 사본·복제물을"을 "해당 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사본·복제물을"을 "해당 정보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군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3항 중 “부군수로”를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 위원”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 ----------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 ---------- ----------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의 주요 업무계획 2. **당해**연도의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 **어느 하나에** ---------- ---------- ---------- ----------**따라** ---------- ---------- 1. **해당** ---------- 2. **해당** ----------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②---- ------- **어느 하나에** ----------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이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따라** ---------- ----------
제5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다.**	제5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한다.**
제5조(공개방법)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공개방법) ③-------- ---------- ---------- ----------**해당 정보를** ---------- ---------- -------
제5조(공개방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방법) ④-------- -------**따라 해당 정보를** ---------- ----------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군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③ --------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④ ----------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전임 위원** ----- <신 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

	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제12조(위원의 해촉) 1. ------ 그 밖의 ----------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해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 ----------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테크노폴리스지구 및 국가산업단지 등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되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가축사육 제한을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일부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확대

- 오염부하가 많은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 거리 500m → 1km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나. 예산조치: 약 30백만원(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용역비)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8. 24. ~ 9. 14. (21일간)

- 의견접수 : 1건 (미반영)

 ● 내용: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500m → 1km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지역여건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붙임 참조]

- 광역시 내 군(郡)의 가축사육제한지역 현황
-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현황

○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를 수정 변경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내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로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일부 오염부하가 많은 축종별 제한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생산녹지)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일부 오염부하가 많은 축종별 제한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일부 오염부하가 많은 축종별 제한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검토의견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 시에는 피해주민의 규모, 해당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평지, 구릉지, 임야 등의 지형적인 조건이나 주된 바람의 방향 등과 같은 기상여건), 사육특성 등을 토대로 제한거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조례안 1부.

[참고 자료]

flower 대구의 미래 달성꽃피다

광역시 내 군(郡)의 가축사육제한지역 현황

행정구역	인구	개정일자	제 한 지 역
대구 달성군	26만	'19.12.30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주거밀집지역) 및 지역경계로부터 – 전 축종 : 500m이내
부산 기장군	17만	'13.03.05	○ 공동주택의 부지경계로부터 – 소·말 : 300m이내 – 젖소·양·사슴 : 500m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 1,000m
인천 강화군	6만	'12.10.11	○ 민가 및 기타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 전 축종 : 300m이내 ※ 기타시설 : 종교시설, 의료시설, 음식점 등
인천 옹진군	2만	'09.01.12	○ 3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 전 축종 : 500m이내
울산 울주군	22만	'15.06.18.	○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 소 : 500m이내 – 젖소 : 500m이내 – 돼지 : 1,000m이내 – 개·닭·오리·메추리 : 1,000m이내 – 양·말·사슴 : 500m이내

인근 타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현황

행정구역	개정일자	제 한 지 역
경산시	'19.03.28.	○ 5가구 이상의 대지경계선부터 – 소·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 : 800m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 2,000m
칠곡군	'20.01.28.	○ 가구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말, 사슴, 양 : 250m이내 – 소, 젖소 : 800m이내 – 닭(육계), 오리 : 1,000m이내 – 돼지, 닭(산란계), 개, 메추리 : 1,200m이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생산녹지)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제36조의 녹지지역(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하천법」 제3조에 따른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내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 지정면적 : 338.56㎢	○ <삭 제>
○ 지정범위	○ <삭 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생산녹지)내 주거밀집지역 및 지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생산녹지)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이하 생략) ·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 구역	·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현행과 같음) ·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 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면적 내역 (생 략)	□ <삭 제>
□ 가축사육 제한구역 총괄도 (생 략)	□ <삭 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집 수당 관련 조항 신설 등)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제명 및 조 제목 개정(제명, 안 제6조)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상위법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제2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20.6.16)에 따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9조제4항~제7항)-신설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방재단원 교육 방법 추가(안 제13조 제1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및 별표)

5.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조문 신설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제1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6조의 조 제목 “해임”을 “해촉 및 해임”으로 명확화 함
-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소집수당)을 지급
 - ·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
 - ·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단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음

- 제13조제1항의 내용 변경(비접촉 교육 방법 추가)
- 제17조제1항제3호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변경하고
- 별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함

○ 검토의견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1. 유사활동단체 지급 소집수당 비교

구 분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수당산정 근 거	소방위 초과근무 수당 단가	일반직9급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일반직7급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1일 8시간 기준 (시간당)	94,440원 (11,805원)	70,376원 (8,797원)	86,728원 (10,841원)	68,720원* (8,590원)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8시간 68,720원 / 방재단의 경우 소집수당외 실비 지급 가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제2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20.6.16)에 따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신설

2. 읍·면별 자율방범단 현황

읍·면	총계(명)	화원	논공	다사	유가	옥포	현풍	가창	하빈	구지
인원	306	47	33	58	36	28	37	27	20	20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임)”을 “(해촉 및 해임)”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단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원칙적으로 방재단이, 교육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보충적으로 군수가, 집합 또는 비집합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해임) ① ~ ② (생략)	제6조 (해촉 및 해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소집) ① ~ ③ (생략) <신설>	제9조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 (교육)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원칙적으로 방재단이, 교육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보충적으로 군수가, 집합 또는 비집합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해보상) ① (생략) 1. ~ 2. (생략)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7조(재해보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등급별 장해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 장해 〔 〕, 장례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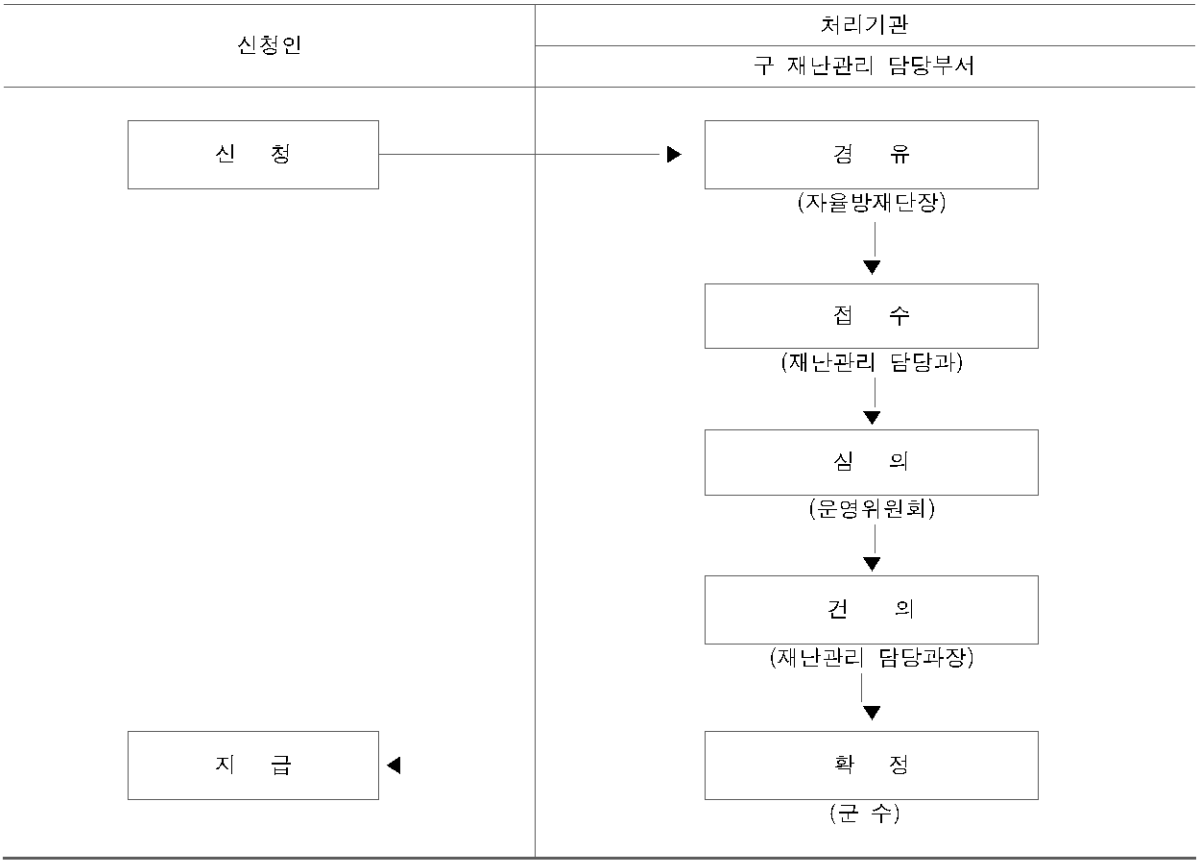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저 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거주 1년 미만(안 제3조제1항)

- 첫째아 - 25만원, 둘째아 - 155만원, 셋째아 이상 - 300만원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거주 1년 이상(안 제3조제2항)

-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 230만원, 셋째아 이상 - 450만원

5.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대구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저 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달성으로 만들어가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제1항에서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거주 1년 미만인 경우 둘째아이(75만원→155만원), 셋째아이 이상(150만원→300만원)
- 제3조제2항에서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거주 1년 이상인 경우 둘째아이(150만원→230만원), 셋째아이 이상(300만원→450만원)

▸시비지원금이 둘째아이는 8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됨으로써 출산축하금의 증액 지원

▣ **참고사항 [2022년 대구시 출산지원사업 조정·시행계획]**

구 분	현 행	'22년 시행(안)	비 고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당 200만원	신설 (국비73.8%)
출산축하용품	10만원상당 육아용품 지원	10만원상당 육아용품 지원	유지
출산축하금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조정**
출산장려금	둘째아(120만원, 24개월) 셋째아 이상(360만원, 18개월)	잔여기간 지원	일몰

○ 검토의견

- 정부,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시행과 시행 중인 대구시 출산지원사업의 조정계획에 의거 시비 지원금이 확대 지원됨으로써 군 조례를 개정,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리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리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첫째아이 : 25만원
2. 둘째아이 : 155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리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첫째아이 : 50만원
2. 둘째아이 : 23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450만원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우리군”을 각각 “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2. (현행과 같음) 3.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이 : 25만원** **2. 둘째아이 : 75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150만원** 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이 : 50만원** **2. 둘째아이 : 15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 ③ (생략) ④ 제2조제3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① ---------- 군에 ---------- ---------- -----. **1. 첫째아이 : 25만원** 2. 둘째아이 : 155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 ② ---------- ------ 군에 ---------- ---------- ---------. **1. 첫째아이 : 50만원** 2. 둘째아이 : 23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450만원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부모 중 1명과 함께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1. ---------- ---------- ---------- -- 군에 ---------- ---- 2. ---------- ---------- -- 군에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에 있어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여기간 변경(제7조제1항, 별표)

-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 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까지 연장가능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유모차)을 대여함에 있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별표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에 있어 기존 대여기간(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에서

→ 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36개월까지 연장 가능으로 변경

※ 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 가능
단, 대여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일 경우, 잔여 개월 수만큼 만 대여 가능

[조례개정 필요성]

▣ 지원대상: 달성군 관내 거주하며 만3개월 ~ 36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
▣ 대여기간: 기본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문 제 점
▸ 유모차를 최대 2년으로 대여할 경우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는 개월수(신생아~36개월)에는 해당하나, 연장 대여가 불가능하여 유모차를 반납해야 하는 가정이 발생함
(예시) 신생아 3개월에 대여할 경우에는 최대 2년(24개월) 사용 후 27개월에 반납해야 함
※ 유모차 대여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이 있어도 대여 불가

※ 유모차 규격 및 사양

구 분	유 모 차		
제 품 명	다이치 앨리	타보베이직트랩	리안 트윈
유 형	절충형	기내반입용 휴대형	쌍둥이 유모차
제품 사진			
프레임 소재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무 게	9.3kg	6.5kg	7.8kg
접었을 때 규격(mm)	570*290* 650	460*320* 510	780*300* 730
펼쳤을 때 규격(mm)	570*920*1,020	460*520*1,050	780*760* 1,020
사용대상	신생아~36개월	신생아~36개월	신생아~36개월
비 고	※ 2020년 구입한 유모차 기종으로 작성 ※ 2018~2019년 구입 : 사용대상 "신생아~36개월"로 동일 - 절충형 : 리안솔로(2018), 리안솔로(2019) - 휴대형 : 리안그램플러스R(2018), 리안그램플러스(2018), 타보베이직엣지(2018), 타보베이직스텝(2019)		

○ 검토의견

-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육아용품(유모차)의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출산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이용료/1대당	6,000원	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
대여기간	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36개월까지 연장가능	※ 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 ※ 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일 경우, 잔여 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 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대여기간 및 연체료는 [별표]를 따른다.

[별표]

○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이용료/1대당	6,000원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대여기간	기본 6개월 최대 2년 연장 가능	삭제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td><td>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별표]

○ 유모차 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이용료/1대당	6,000원	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
대여기간	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	※ 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 ※ 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일 경우,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
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	400원	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

○ <현행과 같음>

</td></tr>
</table>

구 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 <현행과 같음>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2월 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4. 제출사유

○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2019년 군의회 제276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6개소) 및 2021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된 도시계획시설(38개소) 총 44개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Ⅱ. 검토의견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현황**

- 2021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38개소이며, 2019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6개소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949개소 11.6㎢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그 중 집행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2,678개소 10.9㎢로 집행율은 90.8%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71개소 0.7㎢이고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257개소 0.6㎢입니다.
- 2021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동공원 등 38개소 76,228㎡입니다.
- 2019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도로 6개소 13,036㎡입니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군 예산 소요액은 총 271개소(로) 약 1,349억 원으로 제1단계(2022년 ~ 2024년) 사업은 109개소 약 721억 원, 제2단계(2025년 ~ 2027년) 사업은 162개소 약 628억원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와 같이,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1부

2)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1부. 끝.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2,949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271개소

○ 금회 의회보고 대상인 2021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38개소, 2019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집행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6개소

(2021.12.31. 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 시설						집행율 (%)
						미집행 전체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 계		2,949	11,635,295	2,678	10,866,562	271	768,733	14	108,614	257	660,119	90.8
도 로	소계	2,291	5,643,419	2,083	5,343,802	208	299,617	13	62,951	195	236,666	90.9
	중로	316	2,332,569	312	2,302,865	4	29,704	2	20,697	2	9,007	98.7
	소로	1,975	3,310,850	1,771	3,040,937	204	269,913	11	42,254	193	227,659	89.7
궤 도	궤도	1	45,663	-	-	1	45,663	1	45,663	-	-	-
주차장	노외주차장	97	173,928	66	157,118	31	16,810	-	-	31	16,810	68.0
광 장	경관광장	1	19,650	1	19,650	-	-	-	-	-	-	100.0
공 원	소계	92	219,449	71	154,439	21	65,010	-	-	21	65,010	77.2
	어린이공원	67	146,280	62	138,330	5	7,950	-	-	5	7,950	92.5
	소공원	22	16,961	8	6,721	14	10,240	-	-	14	10,240	36.4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	-	2	46,820	33.3
공공공지	공공공지	88	231,116	88	231,116	-	-	-	-	-	-	100.0
녹 지	소계	189	1,795,639	180	1,785,731	9	9,908	-	-	9	9,908	95.2
	완충녹지	130	1,561,289	121	1,551,381	9	9,908	-	-	9	9,908	93.1
	경관녹지	49	143,570	49	143,570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5	1,440,595	4	1,108,870	1	331,725	-	-	1	331,725	80.0
기타시설	기타시설	185	2,065,836	185	2,065,836	-	-	-	-	-	-	1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1.12.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257	660,119	
	도 로	합 계	195	236,666	
		중 로	2	9,007	
		소 로	193	227,659	
	주차장	노외주차장	31	16,810	
	공 원	합 계	21	65,010	
		어린이공원	5	7,950	
		소공원	14	10,240	
		문화공원	2	46,820	
	녹 지	완충녹지	9	9,908	
	연구시설	연구시설	1	331,725	

□ 군의회 보고 및 의회의견 청취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021.12.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44	89,264	
	소 계		38	76,228	
2021년 신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 로	소 로	34	28,815	화원읍 1개소 다사읍 7개소 옥포읍 6개소 가창면 10개소 하빈면 10개소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13	안박실주차장
	공 원	합 계	3	47,200	
		소공원	1	380	안박실공원
		문화공원	2	46,820	도동공원 굿밭골공원
2019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	소 계		6	13,036	
	도 로	중 로	1	7,911	중로3-313
		소 로	5	2,579	소로2-논108
				628	소로2-다78
				259	소로3-논76
				1,081	소로3-다108
				578	소로3-하1

□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71개소(군비 270, 국·시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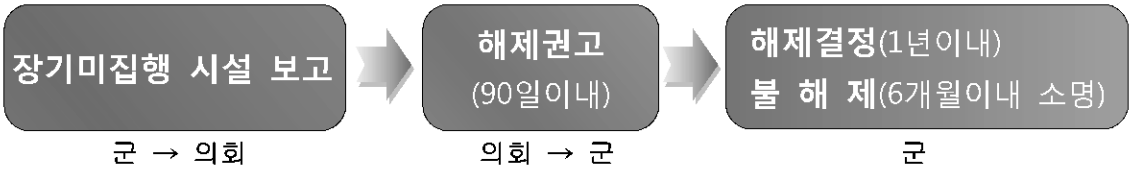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단위 : 천㎡, 억 원)

구분	시설 구분	합 계			2022년 ~ 2024년 (1단계)			2025년 ~ 2027년 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71	770	1,349	109	189	721	162	249	628
군비	소 계	270	438	1,349	108	189	721	162	249	628
	도 로	208	300	814	94	132	338	114	168	476
	궤 도	1	46	310	1	46	310	-	-	-
	주 차 장	31	17	70	2	1	19	29	16	51
	공 원	21	65	120	9	7	38	12	58	82
	녹 지	9	10	35	2	3	16	7	7	19
국·시비	연구시설	1	332	-	-	-	-	-	-	-

참고 1 의회보고 절차 및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



○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참고 2 상위 및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